

# 지방재정공시 제도란?

## I 지방재정공시 제도 개요

-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운용 결과와 주민의 관심사항 등을 객관적인 절차 (홈페이지, 일간지 등)를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는 행위
- 자치단체 재정운용상황에 대해 주민의 이해를 돕고 주민에 대한 재정적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
- 재정운용에 대한 자율 통제기반을 확립하여 자발적인 건전재정 운용 노력을 유도

## II 2013년도 지방재정공시 개선사항

### 1. 재정공시 범위 확대

- 정부 3.0의 실현을 위한 공시항목 확대
  - 주요 투자사업 추진상황 공시 추가
    - 장래 재정부담이 큰 투·융자심사대상사업, 지방채발행사업, 민간 투자사업의 사업유형별 현황 및 각 사업별 추진상황 공시
  - 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 부채, 민간투자사업의 재정부담액 추가
    - 현행 자치단체 채무 외에 자치단체 부채, 지방공기업 부채 및 민간 투자사업의 전년도 재정부담액(임대료, 운영비 등) 추가
    - 자치단체별 지방채발행 한도액과 실제 발행액(최근 5년) 추가
  - 재정책임성 강화를 위한 주민관심 항목 추가
    - 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 현황, 청사관리운영,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, 기금성과 분석결과, 법령위반 등으로 인한 지방 교부세 감액 및 인센티브 내역 등

○ 지방공기업 현황 추가

- 지방공기업(직영기업, 공사, 공단)별 자산, 부채, 수익, 비용, 당기 순이익, 인력, 경영평가 결과 등 신규 공시

○ 원가회계정보 공개

- 원가회계제도 본격 시행에 따라 주민 관심이 높은 단위사업에 대한 원가회계정보 산출·공개('13년 행사축제, '14년 청사주차장 관리 등)

○ 신규 재정제도 반영을 위한 공시항목 신설

- '13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성인지예산, 주민참여예산 시범 반영

※ 재정공시가 전년도 결산 기준임을 감안, 금년은 '13년 당초예산 기준으로 시범 반영하고, '14년 이후 본격 공시(성과예산제도 포함)

□ 비교·판단 정보의 확대

- 동종 자치단체\*와 비교, 연도(최근 5년)간 추이, 주민 1인당 지표 등 비교·판단을 위한 정보 확대로 당해 단체의 수준과 위치파악에 도움

\* 동종 자치단체 : 특광역시, 도, 50만이상 시, 50만 미만 시, 군, 자치구의 6개 유형

- 재정자립도, 재정자주도, 재정력지수 등 재정력 지표 추가

□ 통합공시 항목 확대

- 통합공시 항목을 현행 9개에서 16개로 확대

〈 통합공시 추가항목(7개) 〉

- (건전성) 지자체 부채, 지방공기업부채
- (재정력) 재정자립도, 재정자주도
- (효율성) 사회복지, 지방세비과세·감면, 연말지출
- (책임성) 지방교부세 감액 및 인센티브 현황

## 2. 재정공시 편제방식 개선

### □ 3단계 편제방식 및 항목분류 개선

- 주민이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1단계(공시문, 총괄) → 2단계(공시항목을 11개로 유형화) → 3단계(세부항목별 내용) 편제방식으로 개선
  - 항목의 내용이 많은 경우(예, 재무보고서 등)는 총량만 표시하고 세부내역을 별도 첨부 또는 해당 정보의 위치로 링크
- 종전의 항목 분류는 '총량적 재정운용결과', '재정운용 중요사항' 등 법령·행정용어 중심이었으나,
  - 주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통합공시 항목을 11개 유형\*으로 재분류

\* ① 총괄표(주요항목 전년대비 및 동종단체와 비교), ② 살림규모, ③ 재정여건, ④ 채무부채, ⑤ 채권, ⑥ 행정운영경비, ⑦ 복지 및 민간지원, ⑧ 기금 및 공기업, ⑨ 재정성과, ⑩ 감사평가결과, ⑪ 주요투자사업 추진현황

## 3. 접근성 및 이용 활성화

### □ 공시 접근성 제고

- 재정공시를 주민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자치단체 홈페이지의 단계 최소화
- 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 외 지역일간지, 소식지 등 공시 수단 다양화

### □ 공시내용에 대한 의견수렴

- 공시내용에 관한 문의나 재정운용 관련 건의사항 등에 대해 주민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의견수렴 코너 신설 또는 기존의 질의응답 관련 코너를 안내
- 공시에 대한 열람·조회 기능 구현
  - 가능한 열람·조회 기능을 구현하여 주민들의 이용정도 파악

※ 향후 재정공시 접근성, 충실도 등을 자치단체 합동평가에 반영방안 검토

## 1. 공시주체 : 모든 지방자치단체장

## 2. 공시의 구분 : 공통공시와 특수공시로 구분

- 공통공시 : 지방재정법령에서 정한 자치단체의 일반적인 재정운용상황 공시
- 살림규모, 재정여건, 지방채무, 채권, 행정운영경비, 복지·민간지원 경비, 기금 및 지방공기업, 재정성과, 감사평가, 주요 투자사업 추진 상황 등 10개 분야 43개 세부항목

## ● 공통공시의 범위

## → 총량적 재정운영 결과(지방재정법 제60조)

- 세입·세출예산의 집행상황
- 지방채·일시차입금 등 채무현재액      - 지방채권 현황
- 기금운용 현황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-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
- 발생주의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보고서
- 제55조제3항에 따른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
- 제59조에 따른 통합재정정보

## →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사항(시행령 제68조)

- 재정분석·진단 결과
- 감사원 등 외부 감사기관(상급 지자체 포함)으로부터 받은 감사 결과
- 주민에게 공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사항
  - ▶ 중기지방재정계획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▶ 재정자립도·재정자주도·재정력지수
  - ▶ 보증채무 현황    ▶ 지방공기업 부채 및 일반현황
  - ▶ 민간투자사업 재정부담액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▶ 기관운영 기본경비 집행현황
  - ▶ 청사관리운영    ▶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
  - ▶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▶ 단체장 국외여비 집행현황
  - ▶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▶ 지방의원 국외여비 집행현황
  - ▶ 사회복지비 집행현황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▶ 지방세 지출예산 현황
  - ▶ 맞춤형복지비 운영현황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▶ 민간단체 보조금 집행현황
  - ▶ 행사축제경비 집행현황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▶ 연말지출 비율
  - ▶ 지방세·세외수입 체납현황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▶ 성인지예산, 주민참여예산현황
  - ▶ 원가회계정보    ▶ 지방교부세 감액 및 인센티브 현황
  - ▶ 투융자심사사업, 지방채사업, 민간투자사업 등 주요 투자사업 추진상황

- 특수공시 : 당해 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징 등을 감안한 특수한 재정운용 상황에 대한 공시
- 특수공시를 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각 자치단체별로 설치된 재정공시심의위원회에서 결정

**● 특수공시의 대상**

- 자치단체의 특수한 재정운용 상황에 대하여 각 자치단체별로 설치된 재정공시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
  - 공시대상 건수 대비 2~3배수 정도를 위원회에 상정하여 결정
- 대상사업 선정기준
  - 전년도 업무계획에 의거 추진중이거나 완료된 사업
    - ※ 단체장 치적홍보를 위한 사업, 계획중인 사업은 배제
  - 주민 관심도 제고, 공시의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전체 주민에게 수혜가 있는 사업
  - 타 자치단체에서는 추진하지 않는 고유사업으로 파급효과가 큰 사업 (특수공시사항 예시 참조)
    - ※ 공시건수, 후보건수 선정 등은 탄력적으로 운영

**특수공시사항 예시**

- 노인치매병원 유치 등 핵심 지역숙원사업 또는 특수 지역 유치사업의 재원확보 및 집행상태 등 추진실적
- 상습 침수지역 등 재해위험지역 재정지원결과 전년대비 피해축소 등 재난 및 안전 관련 주민관심사항
- BIO 산업단지 유치관련 재원확보 및 분양실적 등 지역전략산업추진 상황
- 지역 특수주거여건인 달동네 주택개량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등 저소득층 생활개선 관련 주민관심사항
- 지역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설치투자 등 기타 당면 주요 지역현안사업 추진실적 등

### 3. 공시의 시기 : 정기공시와 수시공시로 운영

- 정기공시 : 매년 8월에 정례적으로 실시
- 수시공시 : 재정공시가 필요한 새로운 수요발생시 수시 실시
  - 세입결손으로 인한 실행예산 운영 또는 다음년도 수입을 앞당겨 충당·사용한 경우 등

### 4. 공시방법

- 지역사회 주민들의 접근성, 편의성, 시청률, 구독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선의 수단과 방법을 선택
-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, 당해 지역을 배포지역으로 하는 일간지, 지역방송, 시·군정지(반상회보) 등
  - 자치단체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공시
  - 지역실정에 적합한 시·군정지 등 공시수단 추가 활용
    - 주민접촉이 많은 주민자치센터, 보건소 등에 관련 공시자료가 포함된 시·군정지(반상회보)를 비치
    - 시책홍보를 위한 주민간담회, 정책토론회 등에서 필요시 홍보용 책자 활용 등

### 5. 재정공시 내용에 포함해서는 안 되는 사항

- 공직선거법 위반 우려가 있는 사항
- 정치적 공약, 국익을 저해하는 사항 등
- 국가기밀 또는 의사결정·정책결정 과정에 있는 사항
-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9조에 의한 비공개대상 정보